예 산 총 칙

2019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	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	합 계	699,850,385	20,995,512
일반회계		623,002,383	18,690,071
특별회계		76,848,002	2,305,440
	공기업특별회계	50,680,861	1,520,426
	상수도사업	19,819,325	594,580
	하수도사업	30,861,536	925,846
-	기타특별회계	26, 167, 141	785,014
	의료급여기금	1,970,314	59,109
	발전소주변지역지원	1,311,706	39,351
	밀양댐주변지역지원	234,063	7,022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	1,272,697	38,181
	수질개선관리	4,300,799	129,024
	농공지구조성	3,575,000	107,250
	중소기업육성자금	5,765,000	172,950
	농업발전기금	7,737,562	232,127

- 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'세입·세출예산'과 같다.
- 제 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붙임 '채무부담행위조서'와 같다.
-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'계속비사업조서'와 같다.
-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'명시이월사업조서'와 같다.
-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005,362천 원으로 한다.
- 제 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2,000,000천 원으로 한다.
-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간의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